

제42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20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2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2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2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2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2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2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2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2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3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3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3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3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3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3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3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3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3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3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3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3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3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4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9)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8)
 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2)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56)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3)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0)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5)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3)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9)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4)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4)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40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일단 말씀 듣고 이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전진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전진숙 위원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담은 모수개혁안이 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작년 5월에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로 연금개혁이 성사될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10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처리될 만하면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 합의 문구를 넣자, 정부 여당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국민연금 적자만 쌓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하루에 885억 원의 적자가 쌓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 1%가 낮아지는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최소 26조 1960억 원의 국민연금 적자가 추가로 쌓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소득대체율 50%를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 군복무, 지역가입자 사

각지대를 폭넓게 해소하고자 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크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많은 자문을 주셨던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연금 개혁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믿고 계셨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빈곤 예방 기능과 소득대체 기능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이 아주 취약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안정된 노후보장 체계가 없다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돌봄 비용을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에서 정년 연장, 다층 노후소득보장 등을 검토하여서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반드시 채워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본 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선민 의원, 김예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4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1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크레딧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여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고,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50개월로 되어 있는 출산크레딧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던 것을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김미애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어서 3분 정도씩만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연금개혁안 개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양당에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과 낼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대안에 따르면 고갈 시점은 아무리 늦게 계산을 한다고 쳐도 아마도 2060년대면 거의 고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개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기준의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폰지 사기다라는 적나라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개혁신당은 모든 의원이 80년대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에게도 지금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논의나 단 한 번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진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 존중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보았을 때 개혁신당만을 배제하는 것이냐,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냐, 앞으로 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느냐.

특히 연금이 지금 계산대로 고갈이 되었을 때는 노인 부양 비율이 10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 여야가 합의하는 안이 과연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받을 사람들이 논의하고 낼 사람은 배제하는 연금개혁안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민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위원장 박주민** 또……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과정에 정말 많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여야 의원님, 보좌진들, 관련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요.

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과제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청년세대들의 노후도 소중한 것입니다. 청년세대들에게 지금 국민연금을 깎아서 너희 노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개혁하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방안이고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분이나 또 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분이나 모두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70년 연금 고갈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70년, 지금으로부터 45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모두 재단을 해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여야가 장기간에 걸친 합의를 통해서 이런 협의에 이르게 된 과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국고 지원 등을 포함해서 연금특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연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금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국회가 큰 결음을 다렸다라고 그런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서영석 위원님 말씀 듣고 아까 김미애 간사님이 했으니까……

○김미애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남인순 위원 법사위 가야 되잖아요.

(「빨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민 두 분 정도 얘기 듣고요. 그다음에 이후 프로세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영석 위원님.

이러는 동안도 시간이 갑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년 만에 여야가 연금개혁에 진일보한 점은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모수개혁 내용 중에는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크레딧이 즉각 산입이 아니라 여전히 수급권 취득 시로 되어 있다는 점, 출산크레딧의 12개월이 초저출생 사회에 부족하다는 점, 실업크레딧 개선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소득활동이 있는 노인에 대한 연금감액제도를 그대로 둘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점.

부디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이고 전 국민 연금제도의 취지를 달성함으로써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로 확립되도록 국회가 더 노력하고 복지부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마지막이지요?

21대 국회부터 여야 간 연금개혁안을 긴 시간 논의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청년들이 동의하는 개혁,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리하는 모수개혁은 지극히 미완의 개혁입니다. 국민들께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즉 재정안정화 조치 도입을 비

롯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이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개혁 협의 과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나라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임위 구성 후 첫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특성상 국회의 여건과 정치 분위기와는 별개로 합의의 정신, 협의의 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숙제가 없지 않지만 정치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두개혁이라는 실태에 합의를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강선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보다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이번 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김미애 간사님이 저를 존경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존중도 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존중도 하시고.

○김미애 위원 저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주영 위원님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고 제가 의사를 확인해 보니 표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표결을 해야 돼요?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25항.....

○김미애 위원 굳이 표결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주민 본인이 원하셔서.....

○백혜련 위원 꼭 해야 돼요,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의견을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남겨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주민** 대체하실래요?

○**남인순 위원** 의견 남기셨으니까요.

○**위원장 박주민** 훌륭하십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와 합의정신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1998년 보험료율 조정 이후 27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모수개혁으로서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기금은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심의 과정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 내에서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연금 관련된 법안 심사하고 논의하시고 의결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저희가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이후에 다른 개정이나 개혁도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3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최보윤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정책기획관 임호근
연금정책관 진영주